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1. 발 의 자 : 박한범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 : 2017년 9월 29일

O 회부일자 : 2017년 9월 29일

3. 개정이유

○ 도민감사관 운영 중 도민감사관의 정의, 도민감사관의 구성, 제보사항 등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- O 도민감사관과 도민의 정의 (안 제2조)
- 도민감사관 구성 (안 제4조)
 - 시·군별 2명 이상 8명 이하, 성별을 고려하여 40명 이내로 구성
- O 제보사항 등 처리 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민감사관 운영에 있어 도민감사관의 정의, 도 민감사관의 구성, 제보사항 등 미흡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것 으로,
- O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.
 - 첫째, 안 제2조에서 도민감사관과 도민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,
 - 둘째, 안 제4조에서는 도민감사관의 구성을 40명 이내로 하도록 하되 시·군별로 2명 이상 8명 이하로 하고,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,
 - 셋째, 안 제7조에서는 도민감사관의 제보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음.
- 이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도민감사관의 구성에 있어 시·군별 형평성과 성별 균형성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, 도민감사관의 제보·건의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써 도민감사관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됨.

붙임 :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